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8 ~ 61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8. 11. 25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(2008. 7. 3 대통령령)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(2008. 5. 1 행정안전부)에 따라 정원책정기준 설정 및 정원조정을 통하여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알뜰한 조직으로 정비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.

- 총수 650명 → 645명(감 5명)
- 기능직 10급 86명 → 81명
 - 본청 : 46명 → 44명(감 2명)
 - 직속기관(보건소) : 2명 → 1명(감 1명)
 - 사업소(수송대) : 15명 → 14명(감 1명)
 - 읍 : 6명 → 5명(감 1명)

나. 공무원 종류별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설정(안 제3조).

- 종류별(안 제3조제1항)
 - 일반직(80% 이상), 기능직·고용직(17% 이내), 별정직·정무직(3% 이내)
- 직급별(안 제3조제2항)
 - 일반직 : 4급 이상(1% 이내), 5급(6% 이내), 6급(28% 이내), 7급(31% 이내), 8급(25% 이내), 9급(9% 이상)
 - 기능직 : 6급(5% 이내), 7급(14% 이내), 8급(20% 이내), 9급(29% 이내), 10급(32% 이상)
 - 연구직 : 연구관(3% 이내), 연구사(97% 이상)
 - 지도직 : 지도관(8% 이내), 지도사(92% 이내)
 - 별정직 : 6급 상당(70% 이내), 7급 상당(30% 이상)

다. 정원관리기관별 정원 조정(안 제4조).

- 본청 : 275명 → 273명(감 2명)
- 직속기관 : 123명 → 122명(보건소 감 1명)
- 사업소 : 50명 → 49명(수송대 감 1명)
- 읍 : 41명 → 40명(감 1명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, 제25조, 29조, 제30조

○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지침(2008. 5. 1 행정안전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기획감사실

라. 그 밖에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 입법예고(2008. 11. 13. ~ 11. 24.) 결과 : 별첨

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□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

의견 제출차	제출 의견	검토 결과	반영 여부
산림환경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(안) 제2조(정원의 총수) 제5조(직렬별 정원) -산림이 거창군 면적 76.4%차지하고 있고, 2004년부터 산사태 업무 군 이관, 도시숲, 저탄소 녹색성장 등 산림업무 증가하므로 녹지직 2명 증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'08.5.1 정부의 조직개편지침에 따라 정원을 35명을 감축하고 있어 특정 직렬의 정원의 증원은 어려움이 있음. ● 향후 조직진단과 직무 분석을 통하여 직렬별 정원책정 시 고려하겠음. 	미반영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거창군”을 “군에 두는”으로, “정원”을 “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”으로, “650명이며”를 “645명으로 하며”로, “같다”를 “같이 구분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630명”을 “625명”으로 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정원책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정원에 대한 경과조치) 이 조례의 개정으로 정원을 초과한 현원은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및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에 따라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
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거창군 정원의 총수는 650명이며,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집행기관의 정원 : 630명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원의 총수)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----- 645명으로 하며,-----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----- : 625명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정원관리기관별·직급별 정원) 본청, 의회사무과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·면 등 정원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.</p>	<p>제3조(정원채정기준) ① 지방공무원종류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</p> <p>② 직급별 정원채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4조(직급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. 다만,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<p><신설></p>	<p>제5조(직렬별 정원)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[별표 1]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1항 관련)

구 분	일반직	기능직·고용직	별정직·정무직
비 율	80% 이상	17% 이내	3% 이내

비고

1. 일반직의 경우에는 연구직·지도직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2]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채정기준(제3조제2항 관련)

1. 일반직공무원

구 분	4급 이상	5급	6급	7급	8급	9급
비 율	1% 이내	6% 이내	28% 이내	31% 이내	25% 이내	9% 이상

비고 :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2. 기능직공무원

구 분	6급	7급	8급	9급	10급
비 율	5% 이내	14% 이내	20% 이내	29% 이내	32% 이상

비고 :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3. 연구직·지도직공무원

구 분	연구직		지도직	
	연구관	연구사	지도관	지도사
비 율	3% 이내	97% 이상	8% 이내	92% 이내

비고 :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4. 별정직공무원

구 분	5급상당 이상	6급상당	7급상당	8급상당	9급상당
비 율		70% 이내	30% 이상		

비고

1.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.
2. 읍·면의 공무원정원을 포함한다.

[별표 3]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(제4조 관련)

기관별 직급별	총계	본청	의회	직속기관			사업소	읍	면
				소계	기술센터	보건소			
총 계	645	273	14	122	57	65	49	40	147
정무직 계	1	1							
군수	1	1							
일반직 계	506	225	8	65	16	49	34	35	139
4급	1	1							
4~5급	3	2		1		1			
5급	29	10	3	1		1	3	1	11
6급 이하 계	473	212	5	63	16	47	31	34	128
일반직+지도직 계	18			18	18				
5급 상당	4			4	4				
6급 상당	14			14	14				
일반직+연구직 계 (6급 상당 이하)	2	2							
별정직 계 (6급 상당 이하)	16	1		15		15			
연구직 계 (연구사)	3			2	2		1		
지도직 계 (지도사)	18			18	18				
기능직 계	81	44	6	4	3	1	14	5	8